

환경부 공고 제2005-15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인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구조식, 사용용도 및 면제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OECD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외에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고,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를 환경부로 창구 일원화 함(안 제5조)

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기관의 시설, 운영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유독물의 수입 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최초 신고 후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만 변경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정기검사대상 업체를 모든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점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20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아.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출통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를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2-2110-6960 또는 6964, FAX : 02-504-6068, 전자우편 : lgh031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물질(제품)의 종류, 함량 등 구성성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시 화학물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화학물질 확인의 방법, 확인방법별 보존서류 및 유효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협회의 장은 제조 또는 수입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세관의 화학물질 통관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서의 제출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⑥협회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전자문서로 화학물질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전산처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화학물질 확인, 제3조의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조(화학물질 확인증명의 신청)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서에 해당 물질의 성분내역서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증명의 신청 또는 증명서의 교부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해당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명칭, 구조식, 면제사유 및 기타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절차 및 제출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이 고시한다.

제5조(유해성심사 신청)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 및 수생생태독성 등에 관한 시험성적

서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4.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합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해당물질의 위험성, 유해성 및 안전성에 관하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구조활성관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예측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예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는 유해·위험성조사관련 자료는 전자서류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성심사신청을 접수 받은 3일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적인 제출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다.

- 제6조(자료제출의 생략) ①영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체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별로 생략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 제7조(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 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되 그 심사결과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④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시험자료 요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8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 및 보관 방법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3.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자료
4. 기타 위험성, 유해성 또는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자료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유 및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고시) ①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결과 등을 통지·고시하는 때에는 해당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2. 고유번호(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의 표시 사항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조각호의 시험기관중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GLP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시험기관의 시설, 운영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의 적정성과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신청서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GLP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지정서원본을 첨부하여 지정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지정받은 시험의 범위(분야 또는 세부시험항목의 변경을 포함한다)

⑤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정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다.

⑥기타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11조(상호인정)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자료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을 GLP시험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수실험실운영규정(이하 “GLP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다른 법률에서 GLP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LP규정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제12조(사후평가)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정 후 매 2년마다 GLP 규정의 준수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GLP 규정 및 GLP 시험기관의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13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계획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
2. 조사방법
3.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 산정기준은 화학물질별, 취급·배출시설별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의한 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 산정계수 및 조사대상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4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자료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유독물의 수입 신고)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질을 최초 수입하고자 할 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독물수입 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또는 변경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최초 또는 변경 신고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필증 원본

제16조(유독물영업자의 등록기준)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기준은 해당 법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유독물영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사업자에 한한다)
2.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
3.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자체방제계획(법 제39조 및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취급시설이 관할 지역밖에 있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유독물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8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2. 등록된 유독물의 품목변경
3.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4. 유독물영업을 등록한 관할 지역내에서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한다)

③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원본

제19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

지 제1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는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등록증을 분실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정정을 원하는 경우는 등록증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유독물영업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유독물 유출·폭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정기 점검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시·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개선을 명받은 경우

②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대상자는 정기검사 기간이 종료되기 30일(수시검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신청서에 취급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한 때

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1조(안전진단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명령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진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명령서
2. 정기(수시)검사결과 통보서
3.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항목, 방법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2조(개선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개선계획서의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시설의 개선내역서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3. 개선기간 동안 유독물의 안전관리계획

④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유독물의 관리기준) ①법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급성독성·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유독물관리자 선임서에 의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따른 안전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

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유독물영업등록증 원본
3. 권리·의무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유독물의 표시) ①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분류기준, 그림, 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권고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8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활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동활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9조(공동활용의 변경신고)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활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30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의 신고)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제조·수입할 때에 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찰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후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또는 변경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합량 변경
2. 최초 또는 변경 신고한 제조·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관찰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필증

제31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또는 변경 허가한 물질의 종류나 합량의 변경
2. 최초 또는 변경 허가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변경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증 원본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기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허가기준은 유독물영업 등록기준인 별표 2와 같다. 다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취급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기준은 해당 법의 기준에 의한다.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경우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사업자에 한한다)
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지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자체방지계획(법 제39조 및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변경
2.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한다)

④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취급제한·금지물질허가증 원본

⑤제19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19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질을 구매 또는 제공받고

자 하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내용을 통지받은 자가 다시 판매 또는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서의 사본에 판매자 또는 제공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통보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고, 수입국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서류의 작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6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수량
2.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3. 취급시설의 명세 및 배치도
4.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5.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
6. 사고시 자체방제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7.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등 화학물질 사고방지 활동계획
8. 사고대응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9. 사고시 응급조치계획
10.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고지 및 소산계획
11. 그 밖의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영업허가·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 계획을 제출한 자(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③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수량의 변경으로 영 제24조에서 규정한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기간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량의 증가에 의한 변경사유 발생 : 익년도 60일 이내
2. 보관·저장시설의 증가에 의한 변경사유 발생 : 15일 이내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소방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⑥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및 주민 고지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7조(사고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즉시 별지 제36호서식의 보고서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고후 영향조사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고원인자에게 사고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고 원인자가 개선계획서의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복구내용 및 방법
2. 복구기간 및 공사비
3. 복구기간 동안 작업자 및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③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개선계획서에 포함된 기간내 복구를 완료할 수 없어 사고 원인자가 복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복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9조(화학물질정보센터)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교류를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자료의 수집·평가·관리·제공·홍보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를 행한다.

1.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 평가, 오염도 측정 및 유통량·배출량 조사자료
2.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체물질 및 위해저감 대책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예방·대응 및 조치관련 정보
4.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40조(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 ①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 등록, 허가 및 승인 등을 받은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연간 실

적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전산시스템으로 협회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해서는 제1항의 연간 실적보고서외에 별도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현황을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출입·검사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심사·등록·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6조제1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는 경우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 영향조사 및 복구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 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2조(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43조(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해당여부 등을 검사함에 있어 그 분석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한 서류
2. 화학물질의 판매에 관한 서류
3. 화학물질 주요용도 및 취급 공정에 관한 서류

②법 제46조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8호서식의 화학물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47조(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접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0조(자료보호신청서의 검토 등)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호대상·보호요청기간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자료의 관리방법)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

료의 관리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2. 열람의 절차 및 방법
3. 보관서류장 및 잠금장치의 관리
4. 보호대상 자료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2조(교육과정)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제53조(교육기간 등) ①제52조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52조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는 3년마다 제52조제1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4조(교육계획) ①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 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5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선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교육결과보고) 협회의 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시설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유독물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희망자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9조(교육경비)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또는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수수료)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제61조(보고)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6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제출해야하는 수생생태독성 시험성적서 제출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 취급시설내역서 사본 1부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화학무기의금지물위험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화학물질 확인방법, 보존서류 및 유효기간(제2조관련)**

확인방법	보존서류		유효기간
	서류명	기간	
성분내역서	성분내역서	3년	영구
확인증명서	확인증명서, 성분내역서	3년	영구
제조사,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	제조사, 수출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제공하는 확인서	3년	1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확인방법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년	1년

[별표 2]

**유독물영업자의 등록기준(제16조관련)**

업종별	시설	기준
1. 유독물제조업	제조시설	<p>(1)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2) 폭발·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p> <p>(3)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흘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보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p>&lt; 보관시설 &gt;</p> <p>(1) 기구 및 장비</p> <p>(가)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 및 보호안경을 비치하여야 한다.</p> <p>(나) 유독물을 중화·흡착·회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p> <p>(2) 시설 설치기준</p> <p>(가)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나)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p> <p>(다) 유독물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p> <p>(라) 창문에 보호철망이 있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p> <p>(마) 보관시설안에 선반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풍력 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p> <p>(바) 보관시설의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사)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흘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lt; 저장시설 &gt;</p> <p>(1) 기구 및 장비 : 옥내보관시설의 기준과 같다.</p> <p>(2) 기타</p> <p>(가) 저장물질의 부식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나) 잠금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저장물질의 양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저장시설 또는 그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마)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등을 설치하여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을 부득이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누출어부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업종별	시설	기준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운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독물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운반업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농 기준에 의한 장비등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	(1)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독물의 이송배관·밸브 등 관련설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독물사용업	유독물제조업 등록기준과 같다.	유독물제조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3. 유독물관매업(유독물알선판매업은 제외한다)	보관시설(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보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운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독물운반업의 시설·장비기준과 같다.
	기타	유독물제조업의 기타 기준과 같다.
4. 유독물 보관·저장업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기타	유독물제조업의 기타의 기준과 같다.
5. 유독물운반업	운반차량 및 장비	(1) 운반차량 (가)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형·벤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액체상태의 유독물(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장비 (가) 차량에는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삼 등을 2인용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환광·수량 및 당해 유독물에 대한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고 : 1.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구 및 장비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방제투입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계획에 의한다.

2. 유독물관매업중 알선판매업은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차량 없이 알선·판매만 하는 업을 말한다.

[별표 3]

##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3조관련)

### 1. 공통사항

가.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당해 유독물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 취급자는 사업장안의 바닥을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균열·노후·마모·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다. 취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구·장비·이송배관·밸브 및 누출방지시설 등 관련설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제16조 및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취급자가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유독물을 유통시킬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취급자는 같은 용기에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 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독물을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때에는 용기에 묻어있는 유독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취급자는 유독물이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 유독물영업자·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1회 이상(일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유독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가. 유독물을 제조·사용하는 자는 당해 유독물의 제조·사용과정의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등 이물질의 투입을 예방하고, 운전실에 표시된 온도·압력계와 설비 및 배관 등에 부착된 온도·압력계의 지시값이 같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조절기·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1회 투입량 또는 1일 투입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이를 보관 및 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유독물 500킬로그램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킬로그램 이하)을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 3. 유독물의 저장·보관 관리

가.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연결파이프 등이 부식·손상·노후되어 유독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취급자는 유독물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되, 액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상태로 보관한다.

라. 취급자는 유독물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취급자는 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입·출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

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상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입·출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재고량 정리를 할 수 있다.

바.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같은 보관시설내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유독물과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사. 취급자는 유독물과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을 같은 시설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유독물의 운반관리

가. 취급자는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탱크로리·트레일러 등)가 부식·손상·노후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나.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이를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유독물을 1회 5,000kg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사업소에 비치한다.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의 선정  
: 도로의 선정은 가능한 한 강·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한다.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보유  
: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사고시 신고하여야할 행정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사고시 신고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 인접하천 통과시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3) 운반사고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 휴대  
: 유독물운반차량의 전복사고시에 인근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용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라. 운반업무책임자는 유독물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하여 차량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별표 4]

###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제24조 관련)**

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대기·폐기물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교육을 이수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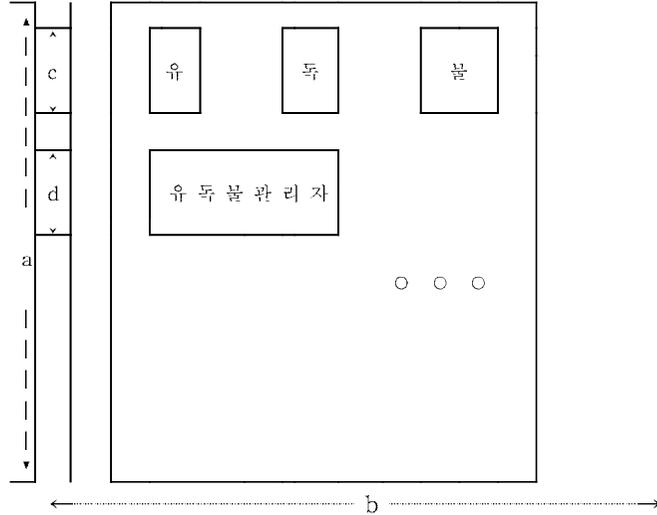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가목·나목의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5]

##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제27조관련)

### 1.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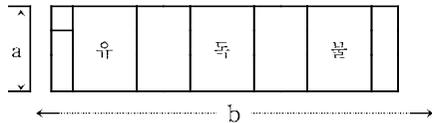


나. 규격 :  $a=50\text{cm}$  이상,  $b=3/2a$ ,  $c=1/4a$ ,  $d=1/4a$ ,

다. 색 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유독물)는 빨강색·문자(유독물관리자, 성명)는 검정색

### 2.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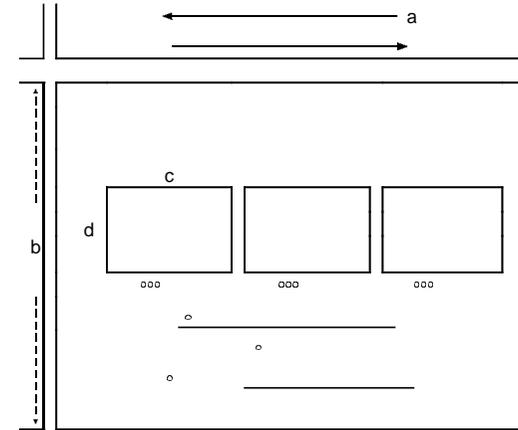


나. 규격 :  $a=20\sim 30\text{cm}$   $b=80\sim 100\text{cm}$

다. 색 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유독물)는 빨강색

###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비교: 유독물의 내용량이 100그램이하 또는 100밀리리터이하인 경우에는 유독물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림 만을 표시할 수 있다.

나.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규격
500ℓ 이상	$45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 a < 4b$ $0.1(a \times b) < c \times d$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 a < 4b$ $0.1(a \times b) < c \times d$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 a < 4b$ $0.1(a \times b) < c \times d$
5ℓ 이상 50ℓ 미만	$9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 a < 4b$ $0.1(a \times b) < c \times d$
5ℓ 미만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0.25b < a < 4b$ $0.1(a \times b) < c \times d$

다. 색 상 : 1) 전체표시의 바탕은 흰색이나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 테두리 및 문자는 검정색. 다만,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한다.

- 2)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오렌지색), 테두리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

[별표 6]

##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 나.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마.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이후
(1) 법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1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2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3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허가증을 대여하여 해당영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4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5) 1년에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5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7) 등록 또는 허가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7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8)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8호				
(가) 당해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9) 제18조제1항, 제33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월
(10) 제18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8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20조제1항 본문·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요건이 등록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8호				
(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되어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되어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다) 기타 시설·장비등이 노후 또는 미달되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12) 법 제20조제3항·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13)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 제8호				
(가) 정기·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내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정기·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1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1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다)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유독물관리자선임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유독물관리자변경명령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1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19)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20)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2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법 제27조·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2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4)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영업을 행한 경우	법 제27조·제36조제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제46조관련)**

( 단, )

위 반 행 위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 (톤)		
	1,000미만	1,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 요건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3,000	6,000	18,000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000	6,000	18,000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00	3,000	6,000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0	6,000	18,000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8)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요건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3,000	6,000	18,000
(9)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10)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00	3,000	6,000
(11)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00	1,800	4,200

비고 :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이라 함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당해 연도 직전 1년간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다만, 영업개시 실적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별표 8]

### 수 수 료(제60조관련)

종 별	수 수 료
1.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10,000원(매품목당)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50,000원
3.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10,000원(매품목당)
4.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100,000원
5. 유독물의 수입신고	15,000원(매품목당)
6.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13,000원
7. 유독물영업의 등록	13,000원
8.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9,000원
9. 정기·수시검사	20,000원
10.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15,000원(매품목당)
11. 관찰물질의 제조·수입 변경신고	13,000원
1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15,000원
13.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13,000원
14.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3,000원
15.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
16.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15,000원
17.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13,000원

비고 : 등록 또는 허가를 지방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으로 납부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9]

###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제61조관련)

구분	회차	대상	주요사항
1.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 실적, 제출자료보호현황	수시	사유발생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2. 유독물영업등록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 현황, 폐업등의 신고 현황	연1회	다음 해 15일 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3. 유독물관리자의 업종별·자격별현황,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승인의 현황	연1회	다음 해 15일 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4. 유독물영업자,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	연2회	매반기종료후 10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5.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내역	수시	신청서접수후 즉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6. 유독물사고발생 및 조치 현황	수시	사고발생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7. 과징금 부과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2회	매반기종료후 10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8. 과징금징수실적	연12회	다음 달 10일 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9. 유해성심사현황, 자료보호현황	연12회	다음 달 10일 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
10. 유해성심사면제확인 현황, 자료보호현황	연12회	다음 달 10일 까지	협회의 장
11. 유독물 수입 신고현황,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현황	연4회	매분기종료후 10일 이내	협회의 장
12.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현황	연4회	매분기종료후 10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후 영향조사 결과	수시	영향 조사 실시후 10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